

유연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2022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수원과학대학교 학칙」 제8조 ②항에 따라 유연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유연학기제”라 함은 학과(전공) 및 학년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학기운영) ① 유연학기제 운영은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운영하거나 한 학기를 집중형 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.

②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유연학기제의 경우 개시일은 여름학기는 7월 1일, 겨울학기는 1월 1일부터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신청 및 승인) 유연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는 정규학기 개강 8주 전까지 교무과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5조(강의계획서) 유연학기제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에 운영시기 및 수업형태 등 유연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·안내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 및 학점) ① 유연학기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유연학기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제7조(등록금) 유연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과(전공부)의 등록금 납부기간이나 등록금액 산정은 정규학기에 학과(전공)와 동일하게 한다.

제8조(기타) 유연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